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 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 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공급세대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3-15 일원		
■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1~29층, 10개동, 총 999세대 중 일반분양 3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 585세대, 일반분양 348세대, 임대60세대, 보류지 6세대)		
■ 시행/시공	덕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라온건설(주)	■ 공급대상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범위
■ 입주예정	2028년 01월 (예정)	■ 분양문의	1800-2120

■ [공급내역]

(단위 : ㎡, 세대)

구 번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시 표기	세대별 면적표(㎡)					총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비고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등)	계약면적		확정	예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 영 주 택	59.90	59A	59.90	21.79	81.69	62.64	144.33	17	2	(10)	
	59.87	59C	59.87	21.78	81.65	62.61	144.26	78	8	(40)	
	59.96	59D	59.96	21.97	81.93	62.70	144.63	37	4	(20)	
	84.98	84A	84.98	28.69	113.67	88.88	202.55	53	5	(25)	
	84.81	84C	84.81	29.80	114.61	88.70	203.31	156	16	(80)	
	114.80	114A	114.80	42.42	157.22	120.06	277.28	2	-	-	
	114.41	114B	114.41	42.09	156.50	119.67	276.17	3	-	-	
	114.24	114D	114.24	41.76	156.00	119.47	275.47	2	-	-	
합계								348	35	(175)	

※ 상기 공급내역은 현재 인허가 진행 단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괄호안 숫자는 예비입주자 추천 세대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주택형						합계	
	약식표기	59A	59C	59D	84A	84C		
국가유공자 등	추천 대상자	-	1	1	-	3	5	
	예비 대상자	-	(5)	(5)	-	(15)	(25)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천 대상자	-	1	-	1	1	3	
	예비 대상자	-	(5)	-	(5)	(5)	(15)	
10년이상 복무군인	추천 대상자	-	1	1	1	4	7	
	예비 대상자	-	(5)	(5)	(5)	(20)	(35)	
중소기업 근로자	추천 대상자	1	2	1	1	4	9	
	예비 대상자	(5)	(10)	(5)	(5)	(20)	(45)	
장애인	경기도	추천 대상자	1	1	1	1	2	6
		예비 대상자	(5)	(5)	(5)	(5)	(10)	(30)
	서울특별시	추천 대상자	-	1	-	1	1	3
		예비 대상자	-	(5)	-	(5)	(5)	(15)
	인천광역시	추천 대상자	-	1	-	-	1	2
		예비 대상자	-	(5)	-	-	(5)	(10)
계	추천 대상자	2	8	4	5	16	35	
	예비 대상자	(10)	(40)	(20)	(25)	(80)	(175)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 ()괄호안 숫자는 예비입주자 추천 세대입니다.
- ※ '국가유공자 등'과 '장기복무제대군인'은 해당기관 업무담당자와 배정 협의 후 배정하였습니다.
- ※ 상기 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정확한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 사업주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1.01.(금)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ds2-raon.com)
건본주택 오픈	2024.11.08.(금) 예정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1번지 일원 당사 홈페이지(https://www.ds2-raon.com)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청약 원칙]	2024.11.11.(월) 예정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4.11.19.(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정당계약 체결	2024.12.02.(월)~12.04.(수) 예정 (10:00~16:00)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건본주택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1번지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단,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서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9: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건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추천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확정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무주택 요건	<p>■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p> <p>-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당첨자 선정방법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구분	내용			
청약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단위 : 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	250	200
	전용면적 102㎡ 이하	600	400	300
	전용면적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small>※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small>				

※ 상기 신청자격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기본 사항만을 안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처리 관련한 내용은 본 안내문 3P(3.신청자격 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예비대상자의 경우 경쟁 시 탈락할 수 있음)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7. 홍보용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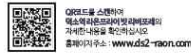
BRAND

살의 즐거움도 집의 새로움도 프라이빗하게 대한민국의 즐거움을 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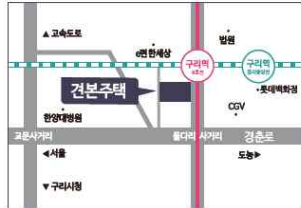
한경주거문화대상
2024 상반기 고객만족대상
2023 별빛아파트대상
2022 아파트대상

매경 살기좋은아파트
2021 대상 | 2018 국토교통부 장관상
2017 매일경제 특별상
2016 미래선도 주택부문

RAON 라온건설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건본주택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1번지 일원

59㎡/84㎡/114㎡
총 999세대 (일반분양 348세대)

문의 **1800-2120**

시행 덕소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 **RAON 라온건설**

본 홍보물을 사용하여서는 어떠한 이름도 사용하지 할 수 없습니다. 본 홍보물은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이 홍보물은 무단 및 인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차관 사본은 권리와 책임이 없습니다.

11월 오픈 예정

RAON PRIVATE

서울을 단숨에 한강을 품은 새도시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한 걸음에 잠실과 강남으로, 도보 한강공원으로 덕소뉴타운 초서울권 대단지

LOCATION

덕소뉴타운 (약 8,500여세대)

덕소뉴타운 (약 8,500여세대)

← 약 30분대 →
8호선-구리역 환승-잠실까지

← 약 20분대 →
경의중앙선 잠실역까지

교통·교육·자연·미래까지 품은 뉴타운 ALL세권 프리미엄

PREMIUM

덕소역 도보 5분 계속 교통망

한강을 품은 힐러라이프

덕소뉴타운 미래까지

우수한 도보 학세권

본 리플렛은 단지 소개를 위한 것으로, 실제 분양 계획은 분양설명서 및 분양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본 리플렛은 단지 소개를 위한 것으로, 실제 분양 계획은 분양설명서 및 분양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본 리플렛은 단지 소개를 위한 것으로, 실제 분양 계획은 분양설명서 및 분양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본 리플렛은 단지 소개를 위한 것으로, 실제 분양 계획은 분양설명서 및 분양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본 리플렛은 단지 소개를 위한 것으로, 실제 분양 계획은 분양설명서 및 분양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